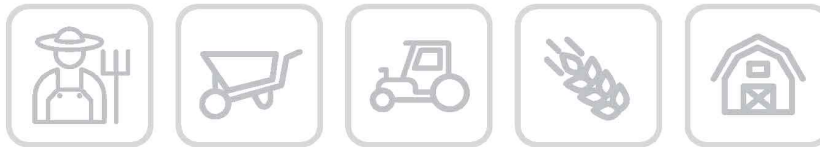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587-01

www.mafra.go.kr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법령집



2017. 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1. 농촌융합산업법 시행령 별표	59
2.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67
II.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81
1. 농외소득법 시행령 별지서식	105
III.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1
1. 도농교류법 시행령 별표	171
2.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177
3. 고시	203
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5
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 인증기준	2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목 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80호, 2016.12.27., 타법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Ⅶ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8	제9조(의견제출 기간) 8	
제10조(인증의 표시) 21		제3조(인증의 표시) 2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2		제4조(인증의 갱신) 2
제12조(결격사유) 2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4		제5조(인증의 승계 등) 24
제14조(인증의 취소) 3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8	제10조(실태조사 등) 8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8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8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운영절차) 28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8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8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28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3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3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3		
제20조(창업지원) 34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3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22조(사업조정 신청) 3	제15조(사업조정 신청) 3	
제23조(판로지원사업) 3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3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3		
제25조(금융지원 등) 3		
제26조(홍보 및 교육) 3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4		
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4	제17조(영업시설기준) 4	
제29조(유희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4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신청 등) 4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4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 4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4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4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4	
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4	제22조(의견제출 기간) 4	
제33조(지구의 지정 해제) 4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4	
제34조(지구 지원) 4		
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운영) 4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50		
제5장 보칙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50		
제38조(보고·검사) 51		
제39조(청문) 51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52	제25조(권한의 위임) 52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53		
제42조(양벌규정) 53		
제43조(과태료) 54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4	
부칙 55	부칙 55	부칙 5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이하 “유·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p> <p>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p> <p>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p> <p>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p> <p>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p> <p>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p> <p>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p> <p>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p> <p>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p> <p>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p> <p>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p> <p>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p>	<p>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p> <p>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강화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p> <p>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p> <p>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p> <p>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p> <p>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p>	<p>변경하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⑤ 시·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시·도계획”은 “시·군</p>	<p>연도 시·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p> <p>⑥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p> <p>⑦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p>	<p>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 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p>	<p>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산 농산물과 해</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p> <p>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p> <p>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p>	<p>당 지방자치단체 생산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말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p> <p>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p> <p>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p> <p>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p>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p>	<p>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p> <p>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p> <p>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p> <p>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p> <p>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제되는 허가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p>		<p>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와 같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p>		<p>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면 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p> <p>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p>		<p>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p>		<p>2. 양수의 경우</p> <p>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p> <p>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p> <p>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p> <p>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p>	<p>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p>	<p>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별 유·무형 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p>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2015.12.22.></p>	<p>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운영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p>	<p>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p>	<p>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 	<p>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p>	<p>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연수</p> <p>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p> <p>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p>	<p>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p> <p>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p>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p>	<p>사항</p> <p>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p>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p> <p>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p>	<p>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p>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상품·서비스를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23조(관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관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p>	<p>제16조(관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p>	<p>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의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그 밖에 협회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5조(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p>	<p>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9조(유희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희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희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희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p> <p>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p> <p>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p>	<p>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업 간의 적합성</p> <p>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p> <p>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p> <p>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p> <p>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제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p>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p> <p>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33조(지구의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p>	<p>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관로 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육성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p>	<p>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홍보 2. 법률·세무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3.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5.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의 홍보 6. 국내외 시장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성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38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기관, 지원센터, 육성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p> <p>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p> <p>3.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p> <p>4. 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p> <p>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p> <p>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지역단위의 실태조사</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1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p>	<p>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과태료) ① 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나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부과·징수한다.</p> <p>부칙<제12730호, 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p>	<p>부칙<제26304호, 2015.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기관, 지원센터 및 육성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7항 및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p>	<p>부칙<제145호, 2015.6.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p> <p>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p> <p>제6조제6항 본문 및 제7조제6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한다.</p> <p>㉞부터 <63>까지 생략</p> <p>부칙<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p> <p>㉞부터 ㉞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p>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㉔부터 <65>까지 생략</p>		

1. 농촌융합산업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조직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문 인력	<p>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2. 농학, 농업경제학,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업무 시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
업무 실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 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 1) 및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3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4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물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건축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벽(유리 등 투명한 재질로 된 벽을 포함한다)이나 층 등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 또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耐水)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조공정 등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그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사목에 따른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100	250	5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80	150	300

2.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제3조 관련)

1. 도안 모형



인증번호:

인증기간: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인증기간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색상: 'b'의 표시는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하고, 도안의 외곽선과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문구는 녹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	-----	----------

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 는 경우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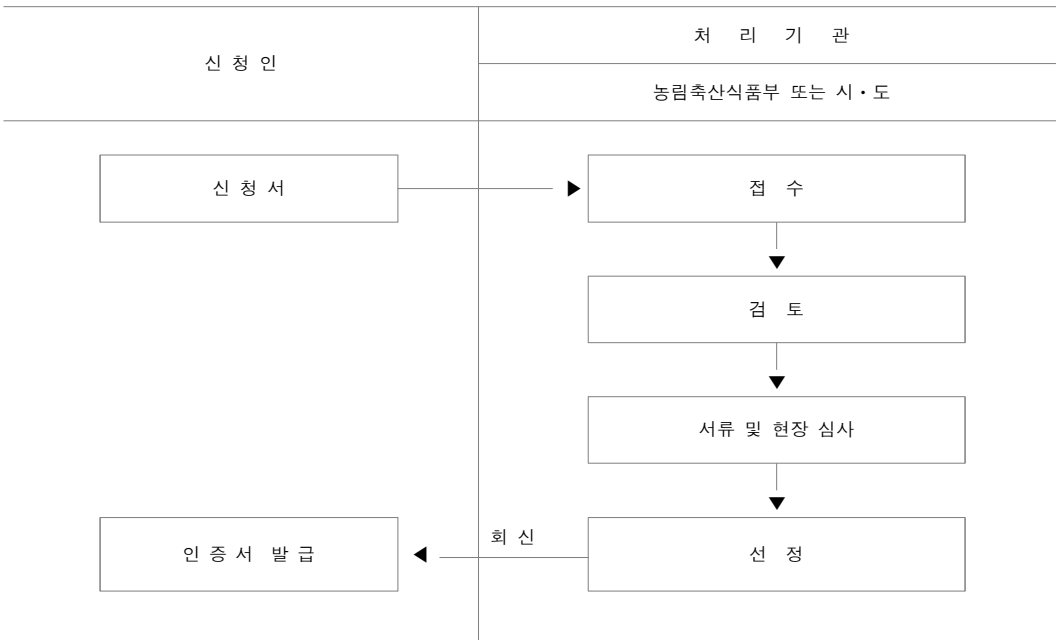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계획서

I. 사업명칭 :

II. 경영체 일반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주생산품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가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m ² (전 답)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m ² (하우스 축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m ² (대지 건물)		
	3차	판매장면적 : m ² (체험시설 m ² 또는 음식점 m ²)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이사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III. 세부 사업 계획

기본방향	(①사업추진 동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여건, ②융복합산업 형태 (1×2차, 1×3차, 1×2×3차), ③목표(매출 포함), 단기·중장기 비전, ④사업추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추진체계 (지역사회 연계성)	(사업 추진 전담조직·인력 및 지역 내 생산, 제조·가공, 유통, 관광 등의 분야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등 기술)

세부계획

(지역 농산물 원물확보 방안, 사업 대상지역·고객, 판로확보 방안,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

투융자 계획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술)

IV. 원물 확보 계획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	(%)	(%)	(%)	(%)
		(%)	(%)	(%)	(%)	(%)
		(%)	(%)	(%)	(%)	(%)
		(%)	(%)	(%)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승계일
	사업장 소재지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2. 기 발급된 인증서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승계인 정보와 승계 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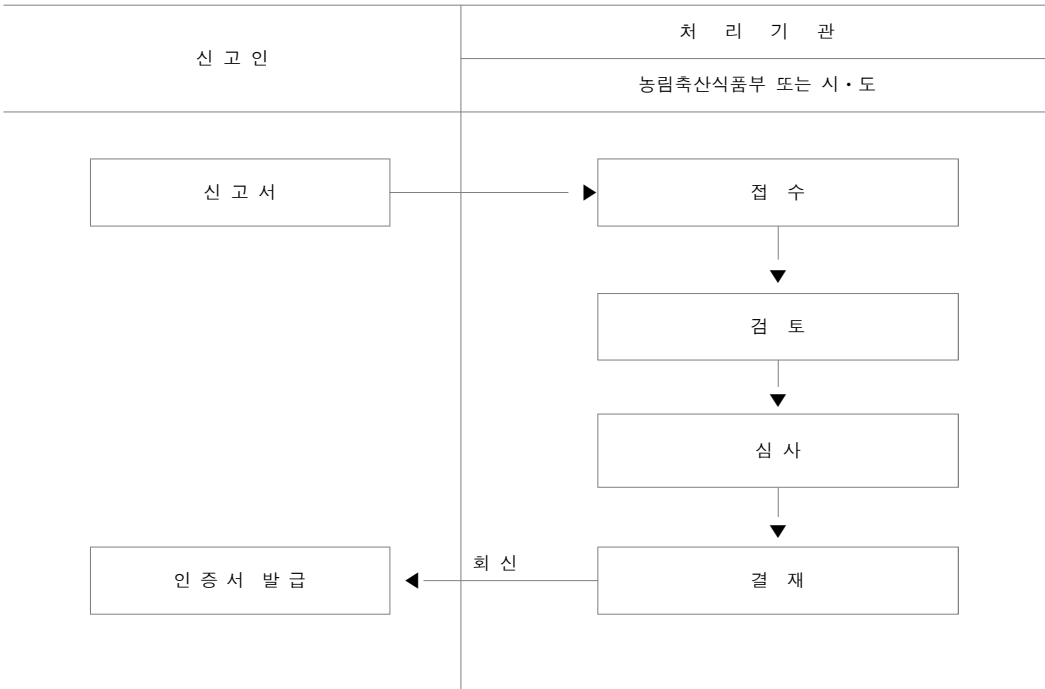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승계인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승계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재지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전국단위)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도단위)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인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재지정 신청	
사업계획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1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동 의 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지정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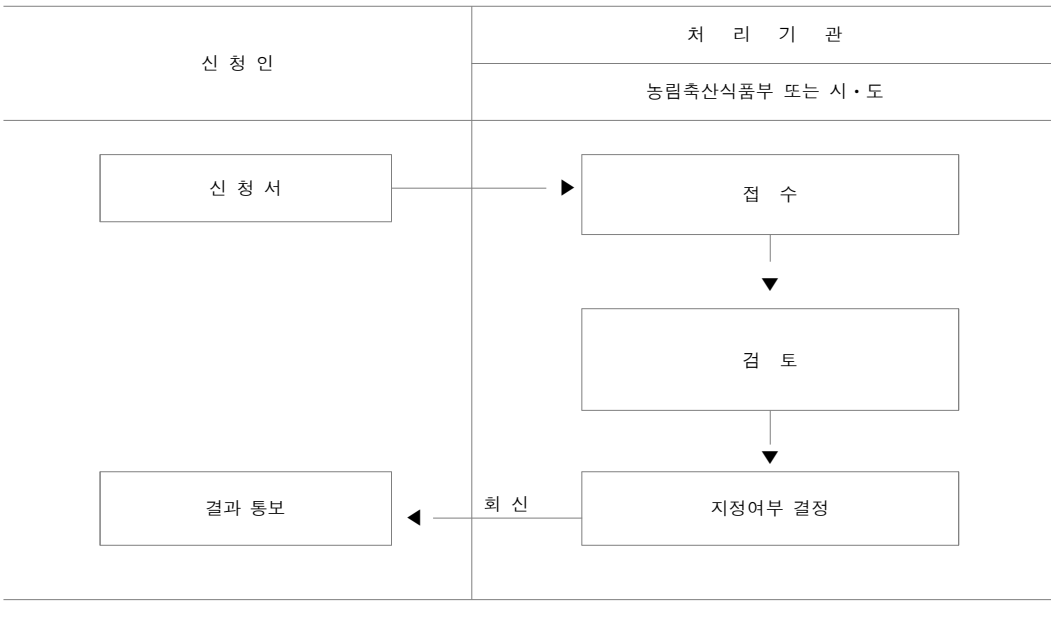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시·도 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중 선택합니다.
6. 사업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목 차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85	제1조(목적) 85
제2조(정의) 85	제2조(농업인들의 범위) 8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6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85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86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86
제5조(실태조사) 87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87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88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88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88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89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89	제8조(사전 협의) 91
제9조(사업계획 승인) 89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91
제10조(사전 협의) 91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95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91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97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95	제12조(권한의 위임) 98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96	부칙 98
제14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96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97	
제16조(권한의 위임) 98	
부칙 98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p> <p>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p> <p>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p> <p>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p> <p>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마케팅·세무·회계·경영·디자인·집적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p>	<p>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 <p>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사업의 우선순위 4. 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p> <p>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조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p>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 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 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p>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p>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6.22.></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4. 주요 사업내용 5. 예상 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6. 목표매출액 7.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방안 8.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제10조(사전 협의)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사전 협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1.14., 2016.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p>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p> <p>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p> <p>7.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p> <p>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p>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p> <p>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p> <p>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p> <p>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p> <p>1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p> <p>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 신고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p> <p>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p> <p>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p> <p>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p> <p>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p> <p>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의 등록 신청</p> <p>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개시의 신고</p> <p>7.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p> <p>④ 시장·군수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사업장을 착공하지 	<p>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p> <p>②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p> <p>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p> <p>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4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들에게 대부할 수 있다.</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이 제1항에 따라 대부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p>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외 소득 활동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외 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외 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p> <p>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제1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부칙<제9760호, 2009.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0331호, 2010.5.31.>(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㉓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p> <p>부칙<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p>	<p>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요청 <p>부칙<제22188호, 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24188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76>까지 생략</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p> <p><288>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289>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제12049호, 2013.8.1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제12050호, 2013.8.13.>(농촌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제12246호, 2014.1.14.>(건축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p> <p>④부터 ⑦까지 생략</p> <p>부칙<제12248호, 2014.1.14.>(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㉑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㉔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p> <p>부칙<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㉓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제13383호, 2015.6.2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p> <p>제9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p> <p>㉔부터 <63>까지 생략</p> <p>부칙<제14480호, 2016.12.27.>(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p> <p>㉒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㉓부터 <65>까지 생략</p> <p>부칙<제14532호, 2017.1.17.>(물환경보전법)</p>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p> <p>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㉕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1. 농외소득법 시행령 별지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농업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명칭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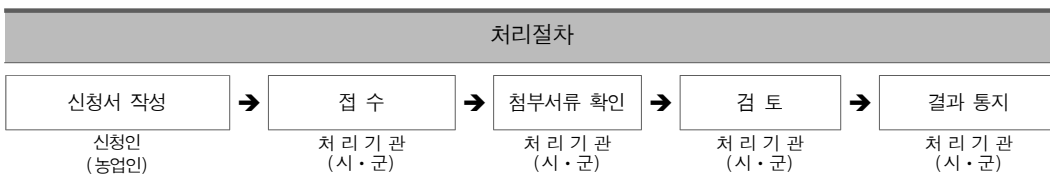
사업개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대지	건물
		m ²	m ²
	업종	종업원 수	
		남:	여:
	명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주요 사업내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농업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전자우편	
	주소		
사업계획	사업장 예정소재지		
	규모	대지 m ²	건물 m ²
	지목	용도지역	
	업종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협의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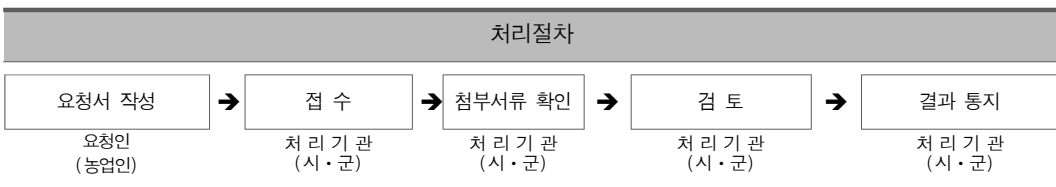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농업법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전자우편
	법인 주소(대표자 주소)	
사업계획	사업장 예정소재지	
	규모	
	대지	m ² 건물 m ²
	지목	용도지역
	업종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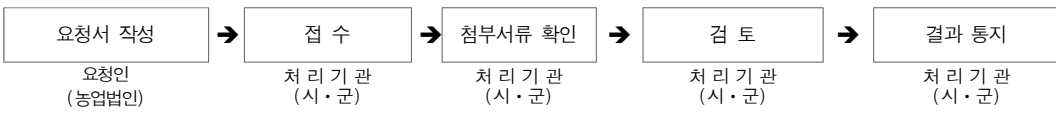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목 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법률 제8751호, 2007.12.21., 제정]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855호, 2008.6.20., 제정]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2008.6.2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Ⅶ	제1조(목적) Ⅶ	제1조(목적) Ⅶ
제2조(정의) Ⅶ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Ⅷ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Ⅷ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Ⅷ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122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 122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 122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 1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126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 126	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 126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 127	제4조(개선명령) …… 127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 127
		제5조(안전·위생교육) …… 128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 129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 129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130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130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130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130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131	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 131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133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 133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 133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134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 134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 136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 138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140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14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141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141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143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143	
	제12조 삭제 <2011.8.30> 143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144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144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147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147
제18조 삭제 <2009.5.27> 147		제12조 삭제 <2009.8.17.> 147
제19조(인증의 취소) 147		제13조 삭제 <2009.8.17.> 147
		제14조 삭제 <2009.8.17.> 148
		제15조 삭제 <2009.8.17.> 148
		제16조 삭제 <2009.8.17.> 148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14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110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110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112		
제6장 보칙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154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154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154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155		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55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157	제14조(권한의 위탁) 157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159	제19조(규제의 재검토) 159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160		
제28조(과태료) 160	제15조(과태료의 부과) 160	
부 칙 162	부 칙 162	부 칙 16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법률 제8751호, 2007.12.21., 제정]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2015.6.22.></p> <p>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p>	<p>[대통령령 제20855호, 2008.6.20., 제정]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2008.6.2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p> <p>2. 삭제 <2009.5.27.></p> <p>3. 삭제 <2009.5.27.></p> <p>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p> <p>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p> <p>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나. 마을 또는 어촌계</p> <p>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p> <p>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p> <p>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p> <p>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p> <p>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p> <p>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p>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시행일 : 2015.12.23.]</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6.12.]</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p> <p>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p>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p>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p>	<p>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p>	<p>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p> <p>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p> <p>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p> <p>나. 운영자금 조달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에만 해당한다)</p> <p>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p>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 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p>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 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p>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p>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p>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사업의 등급을 알리는 표식물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p> <p>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p> <p>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p> <p>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p> <p>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p>	<p>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p>	<p>어촌관광 관련 종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에게 등급결정제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13.]</p> <p>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5.27.,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p>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p>	<p>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p>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p>제5조(안전·위생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p>② 시장·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령을 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p>	<p>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수 	<p>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p>	<p>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p> <p>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p>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p>	<p>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p> <p>4. 수도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p> <p>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p>	<p>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 	<p>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p>	<p>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p>	<p>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3.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6.1.]</p>		<p>4. 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향상 노력의 정도</p> <p>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평가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평가 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3.]</p> <p>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2.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 <p>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구분과 사업별 부문에 따라 해당 부문별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p> <p>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마을의 경관, 주변 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농어촌생활 체험 부문: 체험 관련 시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p> <p>다.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라.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 부문: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2. 관광농원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관광농원의 경관, 주변 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농어촌생활 체험 부문: 체험 관련 시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다.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라. 음식 부문: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3. 농어촌민박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민박시설 주변의 경관·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③ 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13.]</p> <p>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p> <p>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중간에 등급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등급변경결정을 한 사업에</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대하여는 2년마다 하는 정기적 등급결정 시 다시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방향과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활동 지침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심의회에 필요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개정 2013.3.24.></p> <p>③ 등급결정기관이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는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p>	<p>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 	<p>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시기,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과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13.]</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9.></p> <p>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p>	<p>원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p> <p>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p>	<p>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p>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p>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p> <p>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12조 삭제 <2011.8.30.></p>	<p>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p> <p>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p> <p>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p> <p>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p> <p>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p>		<p>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p> <p>1. 교육시설 현황 자료</p> <p>2. 강사 개인별 이력서</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p> <p>⑥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17., 2012.12.13.></p> <p>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p> <p>⑧ 시·도지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개정 2012.12.13.></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18조 삭제 <2009.5.27.></p> <p>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p>		<p>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p> <p>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 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13.></p> <p>제12조 삭제 <2009.8.17.></p> <p>제13조 삭제 <2009.8.17.></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p> <p>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p>		<p>제14조 삭제 <2009.8.17.></p> <p>제15조 삭제 <2009.8.17.></p> <p>제16조 삭제 <2009.8.17.></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 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p> <p>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p>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p>		<p>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2. 기관·단체의 명칭 3.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p>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p> <p>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p> <p>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p>	<p>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p>	<p>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p> <p>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p>	<p>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6.1., 2013.3.23.></p>	<p>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p>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p> <p>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p> <p>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p>	<p>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p>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p> <p>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③ 삭제 <2013.3.23.></p> <p>④ 삭제 <2013.3.23.></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0.]</p>	<p>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 3. 제7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1.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p>	<p>5. 제17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p> <p>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p> <p>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p> <p>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p> <p>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p> <p>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⑥ 삭제 <2009.5.27.></p> <p>⑦ 삭제 <2009.5.27.></p> <p>부칙<제8751호, 2007.12.2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p>	<p>부칙<제20855호, 2008.6.20.></p> <p>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4호, 2008.6.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부칙<제9276호, 2008.12.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p>	<p>부칙<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제21847호, 2009.11.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부칙<제77호, 2009.8.1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208호, 2011.9.30.>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326호, 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327호, 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4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29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다른 한국농어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p> <p>⑧ 부터 ⑮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제9432호, 2009.2.6.> (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p> <p>⑧ 부터 <3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제9715호, 2009.5.27.></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⑫ 부터 <20>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제23108호, 2011.8.30.></p> <p>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p> <p><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p> <p>부칙<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p> <p>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p> <p><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p> <p><17> 부터 <53> 까지 생략</p>	<p>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p> <p>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23조 생략</p> <p>부칙<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p> <p>⑧ 부터 <45>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제10386호, 2010.7.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p> <p>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p> <p>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p> <p>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제10479호, 2011.3.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p>	<p>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31>부터 <76>까지 생략</p> <p>부칙<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p> <p>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제11455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칙<제11699호, 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1877호, 2013.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p> <p>㉓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p> <p>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p> <p>⑬부터 <63>까지 생략</p>		

1. 도농교류법 시행령 별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 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5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40만원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4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4항	20만원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1호	30만원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2호	50만원

2.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도농교류 관련법령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2) 마을경영	
	3) 지역자원발굴·활용	
	4) 홍보·마케팅	
	5)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나.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10시간 이상
	2)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3)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4)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5) 지역사회 파트너쉽 형성	
	6)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7) 혁신과 리더쉽	
	8)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9)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다.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라. 안전교육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마을해설기법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사업자(마을명)		
	마을소재지	전화번호	
	마을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 × 297mm [백상지 80g/㎡]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2.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1. 사업자(마을명) :
2. 사업자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대표자) :
5. 주소(대표자) :
6. 사업개요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유의사항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

1. 사업자(마을명) :
2. 사업소재지 :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대표자) :
5. 주소(대표자) :
6. 사업개요(변경)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도농교류(기부)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처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내용	현금	현물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 영수증
------	-----------

210mm×297mm[백상지 80g/㎡]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발급번호 : 년 - 호

기부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처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 내용	현금	현물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체험봉사 활동 장소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소재지		
신청 내용	활동 기간		비 고
	활동 시간		
	활동 횟수		
	활동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을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대표 귀하

○○관광농원사업자대표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

발급번호 : 년 - 호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자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비 고
	활동 시간	
	활동 횟수	
	활동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대표
○○관광농원사업자대표

(서명 또는 인)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신청인(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분야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체험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농어촌마을해설가							
기본교육의 내용	기본교육 내용	강사	교육교재		교육시간			
			교재명	발행처·저자	계	강의	실습	
교육과정 내용	프로그램 명칭	제공기관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시간			강사구성
					계	강의	실습	
교육시설 현황	시설 구분	시설 수		면적		비고		
	강 의 실			㎡				
	실 습 장			㎡				
	사 무 실			㎡				
	화 장 실			칸				
	건 물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개 조 <input type="checkbox"/> 구조변경						
	소유 관계	<input type="checkbox"/> 자 가 <input type="checkbox"/> 임 차						

210mm×297mm[백상지 80g/㎡]

강사 인적사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교육시설 현황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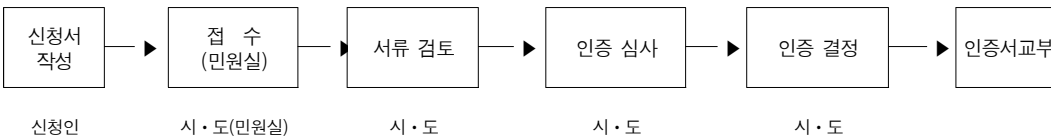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3. 인증분야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4. 유효기간: 20 . . . ~ 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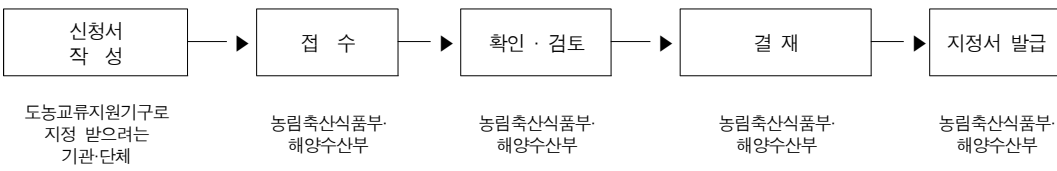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 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1. 기관·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3. 소 재 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

1. 기관·단체명 :
2. 법인등록번호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 :
5. 소 재 지 :
6. 사업내용(변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홍보·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3. 고 시

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 인증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22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 2013. 4.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1호
개정 2015. 4.15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9호
개정 2015. 5. 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29호
개정 2016. 4. 6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란 관광·위생·안전분야 전문가를 갖추고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단체·협회·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등급결정 기관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
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
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
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
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
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
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등급결정 부문별 세부평가 등) 등급결정을 위한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등급결정 제외 대상) 농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농산어촌체험 관광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관광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대상 시설이 없는 농촌관광사업자

제5조(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

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

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제6조(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하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하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 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등급결정기관 또는 현장심사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및 도 체험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인, 고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

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시·도지사 와 도별 체험마을 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

2. 위생·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제8조(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위생·안전분야는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
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의2(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관련 업무수행은 제8조를 준용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현장심사 가능 인원 수만큼 위촉하되, 현장심사위원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장은 발급하지 아니하고 임기는 현장심사기관 권한부여 지정 당해 연도로 한정
2.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필요 시 계약 등을 통해 위촉 가능

제9조(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위생·안전 분야 1인을 포함한 관광 및 위생·안전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한다.

- ②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최근 3년간 해당 마을·농원 및 민박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참여 등을 한 경우 당해 마을 등에 심사를 할 수 없다.

제10조(현장심사 협조) ① 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현장심사단은 [별표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①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심사위원의 책임) ① 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장심사위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장(전국 또는 9개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매회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
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제16조(등급표시 및 결정방법) 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
2. 숙박·음식·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4. 서비스 수준 향상

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농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 되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외 우수 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표

1.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표		
구분	내 용(69개 항목 323점)	
평 가 대 상	경관 및 서비스부문, 농촌생활 체험부문, 숙박부문,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부문	
경관 및 서비스 부문	평가영역	2개 영역(경관·주변환경 및 자원, 고객 서비스)
	항목 수 및 배점	총 11개 항목, 83점(가점 1개항목 2점, 감점 2개 항목 △4점 제외)
		·경관·주변환경 및 자원 : 3개 항목(40점)
		·고객 서비스 수준 : 8개 항목(43점)
		·가점 1개 항목(2점), 감점 2개 항목(△4점)
농촌 생활체험 부문	평가영역	3개 영역(체험프로그램 운영, 실내 체험장 안전관리, 실외 체험장 안전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20개 항목, 85점 (가점 1개 항목 1점 제외)
		·체험프로그램 운영 : 7개 항목(32점)
		·실내 체험장 안전관리 : 8개 항목(37점)
		·실외 체험장 안전관리 : 5개 항목(16점)
		·가점 1개 항목(1점)
숙박부문	평가영역	4개 영역(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출입구 및 안전관리, 객실관리, 화장실 및 욕실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22개 항목, 75점 (가·감점 5개 항목 △2점 제외)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 4개 항목(16점)
		·출입구 및 안전관리 : 3개 항목(11점)
		·객실관리 : 10개 항목(35점)
		·화장실 및 욕실관리 : 5개 항목(13점)
		·가점 : 3개 항목(4점)
		·감점 : 2개 항목(△6점)
농촌체험 휴양마을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부문	평가영역	3개 영역(음식의 특색, 취식 및 조리시설 관리, 건물내·외관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16개 항목, 80점 (가점 1개 항목 2점 제외)
		·음식의 특색 : 1개 항목(10점)
		·취식 및 조리 시설 관리 : 10개 항목(48점)
		·건물 내·외관 관리 : 5개 항목(22점)
		·가점 : 1개 항목(2점)

<경관 및 서비스 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경관 및 자원	1.1 경관·주변 환경 및 자원	
	1.1.1 마을 경관 및 주변환경 (10점) - 최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마을의 생산·생태경관, 자연경관, 주거지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고 심사단 개인별 5단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 점수를 부여할 때 고려한 사항을 2~3개 정도 간략히 기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2. 마을 내부경관 (20점) - 최우수(20점) - 우수(1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 불량(0점) ▶ 마을 내·외부 생태·조경·건축물·벽화·꽃길·푸른들·공원·골목·빈집 정비 및 조성 등 경관 불거리를 보고 심사단 개인별 5단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평가 전반에 대한 고려요소 ▶ 조화성 : 마을 내·외부 경관이 자연과 조화되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 청결성 : 폐가 등이 없이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지 ▶ 쾌적성 : 소음·악취·혼잡함 없이 편안함,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지 ▶ 고유성 : 내·외부 환경 요소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지	
	1.1.3. 마을 향토 자원 (10점) - 최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전통가옥, 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전통축제 계승 등 마을 향토 자원을 보고 심사단 개인별 5단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평가 전반에 대한 고려요소 ▶ 향토성 : 마을의 경관 및 보유자원이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고 계승·발전되고 있는지 ▶ 연계성 : 지역 자원을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으로 공유·활용되고 있는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고객 응대 서비스	2.1 고객 서비스	
	2.1.1. 방문객 안전을 위한 농촌관광보험 가입 여부(5점) - 가입(5점) - 미가입(0점) ▶ 체험관광보험 등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를 보험증서로 확인	
	2.1.2. 마을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5점) - 가입 (5점) - 미가입(0점) ▶ 시설물 보험가입 여부를 보험증서로 확인	
	2.1.3. 홈페이지에서 체험, 숙박 등 정보 제공과 예약 및 환불 고시 여부 (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 ▶ 홈페이지에 예약/환불 관련 정보가 있는지 여부와 방법의 편리성 등을 마을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에서 확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가능하고 가격·환불공시, 안내문에 전화예약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	
	2.1.4.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관리·운영(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담당관리자 유무 및 업그레이드 주기 확인 ▶ 사업자의 정보, 특성, 불거리, 체험프로그램내용, 가격 등 월별 업데이트 내용 확인	
	2.1.5. 신용카드 결제가능 여부(5점) - 가능(5점) - 불가능(0점) ▶ 체험, 숙박, 특산물 대금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확인	
	2.1.6. 마을 운영인력 및 마을주민의 방문객 응대와 불편사항 해결시스템(10점) - 최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방문객들을 반기고, 시골의 정을 느끼도록 대하는지 여부(사진, 기록물 등 확인)와 불편사항 발생시 연락처가 홈페이지, 객실, 체험시설, 게시판 등에 잘 표시(필요시 외국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단 개별 주관적인 평가	
2.1.7. 마을 내 휴식시설 및 안내문(판) 설치여부(5점) - 쉼터 및 안내정보 비치 (5점) - 일부 설치 및 제공 미흡 (3점) - 미설치 (0점) ▶ 쉼터(정자, 파고라, 벤치 등)가 설치되어 방문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마을 안내·홍보물(외국어 포함) 및 주변 관광자원 안내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고객 응대 서비스	2.1.8. 마을대표 및 사무장의 위생·안전교육 이수 여부(3점) - 안전 및 위생교육 모두 이수 (3점) - 1가지 교육만 이수 (2점) - 미이수 (0점) ▶ 최근 1년 이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한 교육이수여부 확인	
<가점>	○ 외래관광객 위한 외국어 표기 홍보·안내문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2점) - 홍보·안내문비치(1점), 홈페이지 구축(1점)	
<감점>	○ 최근 2년간 안전사고(보험료 지불) 및 민원 발생 : 각 각 건당 (△1점), 최대 △3점 ※ 민원발생은 고객으로부터 국민신문고에 등록 제기되거나 마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피해사례(체험, 휴양에 대한 불만족 등)가 있다고 접수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마을 운영자의 윤리적 문제에 따른 정부기관의 징계 조치 시 : 건당(△1점)	

<농촌생활 체험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 체험프로그램 운영	
	1.1.1. 프로그램의 마을 내 자원 연관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마을 내 특화자원(기념물, 전설, 특정자원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자료 및 운영실적 확인(최근 2년 내 실적 및 자료 5건 이상: 우수, 4~2건: 보통, 1~0건: 미흡)	
	1.1.2. 계절별, 방문자 유형별, 체험형태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계절별, 방문자 유형별, 체험형태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유무와 종류별 실제 운영 여부, 체험활동 모습·과정 등을 프로그램 리스트, 운영 자료 및 사진자료 등을 보고 확인	
	1.1.3.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유무 및 운영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매뉴얼은 체험적정인원, 진행인원, 진행방법, 체험도구 등 준비물, 안전 등 주의할 점, 체험에 따른 학습(기대) 효과 등을 말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체험 프로그램 운영	<p>1.1.4. 체험관련 전문 운영인력 확보(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전문 운영인력 : 숲해설사, 농촌체험지도사, 농촌마을 해설가, 교육학 또는 관광·관광관련 전공 대학졸업자, 전통문화·예술관련 기능보유자, 조리사 등 ▶ 전문 운영인력 자격증 또는 수료증 등 증명서를 통해 전문인력 인원 수 등 확인(5명이상:5점 우수, 4~3명:3점 보통, 2~1명:1점 미흡) ▶ 1인이 다수 자격증 보유 시 다수 인력으로 인정</p>	
	<p>1.1.5. 체험프로그램 설문조사 실시 여부 (2점) - 실시 (2점) - 미실시 (0점) ▶ 설문항목을 홈페이지 또는 체험장 내에 공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하여야 함</p>	
	<p>1.1.6. 체험일지 기재(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일지의 충실도 평가 : 인원수, 체험내용, 안전교육 실시여부, 사고현황, 사진 첨부 등을 통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1.1.7. 체험시설에 안전매뉴얼(또는 안전 안내문) 부착 여부(5점) - 전체 시설에 부착(5점) - 일부 시설만 부착(3점) - 미부착(0점) ▶ 체험시설 전체에 상세한 안전매뉴얼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확인</p>	
② 실내 체험장 안전 관리	<p>2.1. 실내 체험장 안전관리</p>	
	<p>2.1.1. 체험장 외관 및 출입구 관리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장 외관 파손, 부식, 탈색 여부 및 주변 쓰레기 방치 여부 등을 육안 확인</p>	
	<p>2.1.2. 실내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실내 오물, 먼지, 거미줄 유무와 비품·체험도구 정리상태 등을 육안 확인</p>	
	<p>2.1.3. 실내 조명(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체험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정성평가)</p>	
	<p>2.1.4. 화장실, 세면장 설치 및 청결유지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장 인근 화장실·세면장 설치 여부 및 청결·휴지 구비 등 관리 상태 육안 확인</p>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실내 체험장 안전 관리	2.1.5. 위험시설물 및 비상구 표지판 설치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체험장 내 비상구 표지판 및 화기, 튀어나온 못, 각진 모서리 등 위험시설 유무 육안 확인 ▶ 단층 건물은 출입구가 바로 실외로 연결되는 경우 비상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	
	2.1.6. 체험도구·장비 또는 전시물 관리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도구·장비 또는 전시물 관리상태(파손, 불결 등) 육안 확인	
	2.1.7. 체험장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2.1.8. 비상약품 및 소화기 비치 여부(5점) - 모든 체험장 내 의약품과 소화기 비치(5점) - 일부 체험장 내 의약품과 소화기 비치(3점) - 미비치(0) ▶ 비상약품(내용물 상태 양호) 및 소화기(충전 및 유효기간 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③ 실외 체험장 안전 관리	3.1. 실외 체험장 안전관리	
	3.1.1. 실외 체험장 주위 청결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체험장 주변 쓰레기, 빈병, 오물, 먼지, 악취 발생 유무 등 육안 확인	
	3.1.2. 실외 체험장 주변의 위험시설물 유무 (2점) - 없음(2점) - 있음(0점) ▶ 실외 체험장의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 장치 유무 등 육안 확인	
	3.1.3. 야외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여부(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야외화장실·세면장 설치 여부 및 청결·휴지 구비 등 관리상태 육안 확인	
	3.1.4. 악천후 대비 운영대책(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기상악화 등에 따른 악천후 대비 매뉴얼 및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관련자료 확인	
	3.1.5. 야외 체험도구·장비 관리상태 및 위험요인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운영(물놀이 등)시 안전장비 구비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도구·장비 파손, 불결 여부 등 관리상태와 물놀이 등 안전장비가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장비 구비 여부 확인	
<가점>	○ 프로그램 상시성 여부(1점) - 있음(1점) : 마을 방문 시 항상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 없음(0점)	

<숙박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1.1.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1.1.1. 숙박 건물외관 청결 및 보존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건물 외관 파손, 부식, 탈색 여부, 주위 쓰레기 방치 등 관리 상태를 육안 확인	
	1.1.2. 외관 및 주위환경이 마을특색 반영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건물외관(지붕, 벽면 등) 및 주변(울타리, 화단)이 마을 특화물(나무, 꽃, 농특부산물, 옹기, 황토, 신우대 등)로 조경되거나 꾸며져 지역 특색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고 심사단 개인별 주관적으로 평가	
	1.1.3. 소음 및 악취 유무(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 ▶ 숙박시설 외부 또는 주변에 소음 유발시설, 축산분뇨·퇴비장·양돈장·양계장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확인	
	1.1.4. 객실, 복도, 계단, 욕실 등의 소독 유무(3점) - 우수(3점) - 보통(1점) - 미흡(0점) ▶ 1~2개월 미만 마다 1회(우수), 2~6개월미만 1회(보통), 6월이상(미흡), 소독실시 자료 확인(관리일지 및 서명여부 확인)	
② 출입구 및 안전관리	2.1. 출입구 및 안전관리	
	2.1.1. 건물 출입구(출입문, 계단 포함)의 청결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출입구, 출입문 및 계단 주변 쓰레기, 빈병, 오물, 먼지 등 유무와 정리상태 확인	
	2.1.2.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표시 여부(3점) -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가 모두 있음(3점) - 일부 객실에만 있음(2점) - 소화기 관리가 부실하고 비상구 표시가 없음(0점) ▶ 각 층마다 또는 객실마다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표시 여부 확인 ▶ 단층건물의 경우 출입구가 바로 실외로 연결되는 경우 비상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	
	2.1.3.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③ 객실 관리	3.1. 객실 관리	
	3.1.1. 객실 분위기 (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정갈하고 객실에 어울리는 벽지 또는 마감재, 적절한 조명상태 (객실, 복도, 계단), 커튼 등 사용 여부 확인	
	3.1.2. 객실 및 창문마다 잠금장치 설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객실마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육안 확인	
	3.1.3. 객실 내부(문·벽·바닥·창문·천장 등) 청결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객실 내부 얼룩, 오물, 먼지 유무 및 파손되거나 금간 부분 유무 등 관리상태 확인	
	3.1.4. 객실 내 악취 유무(2점) - 우수(2점) - 미흡(0점) ▶ 객실 내부 곰팡이나 기타 역한 냄새 유무 확인	
	3.1.5. 방충시설 설치 여부(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객실 창문에 방충망 설치 및 상태 확인	
	3.1.6. 객실 냉·난방 조절 기능 유무(3점) - 있음 (3점) - 없음 (0점) ▶ 객실 냉·난방시설 확인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조절기능 확인	
	3.1.7. 침구류 청결 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침구류 얼룩 및 머리카락 부착, 냄새 발생 유무 등 관리상태 확인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합숙자) 1인(1회)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시트갈이 등)하고, 수시로 일광(건조)	
	3.1.8. 비품관리 상태(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비품(옷걸이, 거울, 티슈 등 비치) 확인	
	3.1.9. 비상손전등 비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비상손전등 비치여부 확인	
3.1.10. 객실이용 약관 (안내문) 비치 및 고객불편 해소 안내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객실 이용 관련 약관(안내문)을 객실내부 또는 육안으로 식별이 쉬운 곳에 비치여부 확인 ▶ 비상시 마을 담당자 전화번호나 연락가능한 공공기관 전화번호, 비상대피도 등 객실 내에 제공하는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④ 화장실 및 욕실관리	4.1. 화장실 및 욕실 관리	
	4.1.1. 화장실 실내위치 여부(1점) - 있음(1점) - 없음(0) ▶ 화장실·샤워실 객실마다 위치 또는 건물 실내위치 여부 등 확인	
	4.1.2. 좌변기 및 샤워기 설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좌변기 및 샤워기 설치 여부 확인	
	4.1.3. 온수 제공 및 공급 수량(3점) - 우수(3점) - 보통(1점) - 미흡(0점) ▶ 화장실 및 샤워실 온수 제공 여부 및 수량 상태 확인	
	4.1.4. 화장실 환풍기 설치 및 작동, 청결 여부(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육안 확인	
	4.1.5. 화장실 청결 및 조명 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화장실 냄새 및 오물 유무, 내부 시설 및 마감재 등 청결 상태 및 미끄럼방지 조치, 적절한 조명상태 확인, 휴지·비누 등 비치 여부	
<가점>	○ 숙박 전용 시설 여부(1점) - 전용(1점) - 비전용(0점) ▶ 숙박을 위한 단독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육안 또는 자료로 확인	
	○ 객실 종류의 다양성 및 명패 부착 여부(1점) - 우수(1점) - 미흡(0점) ▶ 객실크기가 다른 2종류 이상 객실 구비 및 객실별 명패 부착 여부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2점) - 준수(2점) - 미준수(0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 2014.3.21)을 채택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홈페이지 및 안내문 등에 게시)	
<감점>	○ 최근 2년간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보험료 지불) 발생 : 건당 (△1점)	
	○ 시설 및 안전기준 관계법률 미준수 : (△5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소방 및 안전시설 기준)의 미 준수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음식의 특색	1.1. 음식 특색	
	1.1.1. 마을 특색을 반영한 음식 제공(10점) - 우수(10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마을 특색이 반영된 음식이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지역농특산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지 확인, 제공되는 음식의 사진자료, 식단 등으로 확인	
② 취식 및 조리시설 관리	2.1. 취식 장소 청결상태	
	2.1.1. 취식장소 청결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취식장소 열독, 오물, 먼지 유무 및 전반적인 분위기 등 육안 확인	
	2.1.2. 취식장소 종사원 복장 청결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종사원 위생복장(위생복, 위생모 등) 착용 여부 및 위생복 청결상태 등 육안 및 관리상태 확인(사진자료 또는 위생복 관리상태로 확인)	
	2.1.3. 실내 또는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시설 관리(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취식장소 인근에 화장실·세면장 유무 및 청결 등 관리상태 육안 확인, 휴지·비누 등 비품 비치	
	2.2. 조리 장소 청결상태	
	2.2.1. 조리장소 청결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조리실 내부 집기와 환기구, 바닥 등 시설 관리상태 및 배수구 등 오물, 냄새 유무 확인	
	2.2.2.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2점) - 설치(2점) - 미설치(0점) ▶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가스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는 2점)	
	2.2.3. 식재료 및 양념 등 보관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냉동·냉장시설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유통기간 준수여부 등 육안 확인	
	2.2.4. 조리실 종사자 위생복장 착용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조리실 종사자 위생복장 착용 여부 및 위생복 청결상태 등 육안 및 관리상태 확인(사진자료 또는 위생복 관리상태로 확인)	
	2.2.5. 내부 정기적 소독 여부(2점) - 실시(2점) - 미실시(0점) ▶ 주기적 소독 실시 자료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취식 및 조리시설 관리	2.3. 식기 위생관리	
	2.3.1. 식기 위생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식기 종류 및 관리상태 육안 확인 2.3.2. 식사 부대 비품(칼, 행주, 컵 등) 등 관리 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식기소독기, 건조기 등 사용 여부 및 식기 및 비품 보관상태 육안 확인	
③ 건물 내·외관 관리	3.1. 건물 내·외관 관리	
	3.1.1. 취식 및 조리장소 외관 관리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외관 파손, 부식, 탈색 여부 및 주변 청결상태 육안 확인	
	3.1.2. 식음장소 청결 및 관리상태(5)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음식 제공장소에 파리 등의 위생해충이 없고, 식탁 및 의자, 바닥 등이 깨끗이 청소·정돈되고 있는지	
	3.1.3. 조명 상태(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취식 및 조리장소의 활동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정성평가)	
	3.1.4.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3.2. 비품관리 상태	
3.2.1. 냉난방시설 및 청결 등 관리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냉·난방시설 :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난로 등 ▶ 식사시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와 청결 등 관리 및 작동상태 육안 확인		
가점	○ 친환경 농산물 사용·제공(2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림축산물 사용(주재료·원료) ※ 친환경인증 여부 등은 인증증명서 등 관련자료 확인	

2. 관광농원 등급결정 평가표

구분		내용(65개 항목 275점)
평가대상		경관 및 서비스부문, 농촌생활 체험부문, 숙박부문, 음식부문
경관 및 서비스 부문	평가영역	2개 영역(경관자원, 고객응대 서비스)
	항목 수 및 배점	총 11개 항목, 65점(가점1개항목(2점), 감점 2개 항목(△2점 제외))
		·경관 및 자원 : 2개 항목(30점)
		·고객 서비스 : 9개 항목(35점)
	·가점1개항목(2점), 감점 2개 항목(△2점)	
농촌 생활체험 부문	평가영역	2개 영역(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장 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16개 항목, 57점 (가점 1개 항목 1점 제외)
		·체험프로그램 운영 : 7개 항목(23점)
		·체험장 안전관리 : 9개 항목(34점)
	·가점 1개 항목(1점)	
숙박부문	평가영역	4개 영역(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출입구 및 안전관리, 객실관리, 화장실 및 욕실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22개 항목, 75점 (가·감점 4개 항목 1점 제외)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 4개 항목(14점)
		·출입구 및 안전관리 : 3개 항목(11점)
		·객실관리 : 10개 항목(35점)
		·화장실 및 욕실관리 : 5개 항목(15점)
		·가점 : 3개 항목(4점)
·감점 : 1개 항목(△3점)		
음식부문	평가영역	3개 영역(음식의 특색, 식당관리, 식당 시설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16개 항목, 78점 (가점 1개 항목 2점 제외)
		·음식의 특색 : 2개 항목(15점)
		·식당 관리 : 9개 항목(43점)
		·식당 시설 관리 : 5개 항목(20점)
	·가점 : 1개 항목(2점)	

<경관 및 서비스 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경관 및 자원	1.1 경관 및 주변환경	
	1.1.1 관광농원 경관 및 주변환경 (10점) - 최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관광농원 입지 및 주변 경관을 보고 심사단 개인별 5단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 점수를 부여할 때 고려한 사항을 2~3개 정도 간략히 기술 ○ ○	
	1.1.2. 관광농원 내부 경관 (20점) - 최우수(20점) - 우수(1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 불량(0점) ▶ 관광농원 내부 생태, 조경, 건축물, 벽화, 꽃길 및 공원 조성 등 경관 및 볼거리를 보고 심사단 개인별 5단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 ○ ※ 평가 전반에 대한 고려요소 ▶ 조화성 : 관광농원 내·외부 경관이 자연과 조화되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 청결성 : 쓰레기·방치 시설물 등이 없이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지 ▶ 쾌적성 : 소음·악취·혼잡함 없이 편안함,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지 ▶ 고유성 : 내·외부 환경 요소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지	
② 고객 서비스	2.1 고객 서비스	
	2.1.1. 방문객 안전을 위한 농촌관광보험 가입 여부(5점) - 가입(5점) - 미가입(0점) ▶ 체험관광보험 등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를 보험증서로 확인	
	2.1.2. 관광농원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5점) - 가입 (5점) - 미가입(0점) ▶ 시설물 보험가입 여부를 보험증서로 확인	
	2.1.3. 홈페이지에서 체험, 숙박 등 정보 제공과 예약 및 환불 고시 여부 (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 ▶ 홈페이지에 예약/가격/환불 관련 정보가 있는지 여부와 방법의 편리성 등을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에서 확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가능하고 가격·환불 공시, 안내문에 전화예약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고객 서비스	2.1.4.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관리·운영 (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전담관리자 유무 및 업그레이드 주기 확인 ▶ 사업자의 정보, 특성, 볼거리, 체험프로그램내용, 가격 등 월별 업데이트 내용 확인	
	2.1.5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5점) - 가능(5점) - 불가능(0점) ▶ 체험, 숙박, 특산물 대금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확인	
	2.1.6. 방문객 응대와 불편사항 해결시스템(5점)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불량(0점) ▶ 방문객들을 반기고, 시골의 정을 느끼도록 대하는지 여부(사진, 기록물 등 확인)와 불편사항 발생시 연락처가 홈페이지, 객실, 체험시설, 계시관 등에 등에 잘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단 개별 주관적인 평가	
	2.1.7. 농원 내 휴식시설 및 안내문(판) 설치여부 (2점)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쉼터(정자, 파고라, 벤치 등) 가 설치되어 방문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농원 안내·홍보물(외국어 포함) 및 주변 관광자원 안내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평가	
	2.1.8. 주차편리성(2점) - 우수(2점) - 미흡(0점) ▶ 자가용, 관광버스 등 주차공간 또는 여유공간 확보	
	2.1.9. 농원 대표자의 위생·안전교육 이수 여부(3점) - 안전 및 위생교육 모두 이수 (3점) - 1가지 교육만 이수 (2점) - 미이수 (0점) ▶ 최근 1년 이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한 교육이수여부 확인	
<가점>	○ 외래관광객 위한 외국어 표기 홍보·안내문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2점) - 홍보·안내문비치(1점), 홈페이지 구축(1점)	
<감점>	○ 최근 2년간 안전사고(보험료 지불) 발생 : 건당 (△1점)	
	○ 최근 2년간 관광농원 운영자의 윤리적 문제에 따른 정부 기관의 징계 조치 시 : 건당(△1점)	

<농촌생활 체험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 체험프로그램 운영	
	1.1.1. 프로그램의 지역 내 자원 연관성 여부(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지역 내 특화자원(기념물, 전설, 특정자원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자료 및 운영실적 확인	
	1.1.2. 계절별, 방문자 유형별, 체험형태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계절별, 방문자 유형별, 체험형태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유무와 종류별 실제 운영 여부, 체험활동 모습과정 등을 프로그램 리스트, 운영 자료 및 사진자료 등을 보고 확인	
	1.1.3.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유무 및 운영 여부(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매뉴얼은 체험적정인원, 진행인원, 진행방법, 체험도구 등 준비물, 안전 등 주의할 점, 체험에 따른 학습(기대) 효과 등을 말함	
	1.1.4. 전문 운영인력 확보(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전문 운영인력 : 숲해설사, 농촌체험지도사, 농촌마을 해설가, 교육학 또는 관광 관광관련 전공 대학졸업자, 전통문화예술관련 기능보유자, 조리사 등 ▶ 전문 운영인력 자격증 또는 수료증 등 증명서를 통해 전문인력 유무 확인	
	1.1.5. 체험프로그램 설문조사 실시 여부 (2점) - 실시 (2점) - 미실시 (0점)	
	1.1.6. 체험일지 기재(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일지의 충실도 평가 : 인원수, 체험내용, 안전교육 실시여부, 사고현황, 사진 첨부 등을 통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1.1.7. 체험시설에 안전매뉴얼(또는 안전 안내문) 부착 여부(3점) - 전체 시설에 부착(3점) - 일부 시설만 부착(2점) - 미부착(0점) ▶ 체험시설 전체에 상세한 안전매뉴얼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확인	
② 체험장 안전관리	2.1. 체험장 안전관리	
	2.1.1. 체험장 주위 청결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체험장 주위 쓰레기, 빈병, 오물, 먼지, 악취 여부 등 육안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체험장 안전관리	2.1.2. 체험장 내부 청결상태 및 밝기 (3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0점) ▶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조명 및 밝기인지 여부와 내부 청결상태 확인	
	2.1.3. 위험시설물 및 비상구 표지판 설치 여부(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체험장 내 비상구 표지판 설치 여부 및 화기, 튀어나온 못, 각진 모서리 등 위험시설 유무 육안 확인 ▶ 단층 건물은 출입구가 바로 실외로 연결되는 경우 비상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	
	2.1.4. 화장실(야외 화장실 포함) 관리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화장실 설치 여부 및 청결·휴지 구비 등 관리상태 육안 확인	
	2.1.5. 세면장(야외 세면장 포함) 관리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세면장 설치 여부 및 비누 등 비품 구비, 청결 등 관리상태 육안 확인	
	2.1.6. 악천후 대비 운영대책(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기상악화 등에 따른 악천후 대비 매뉴얼 및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관련자료 확인	
	2.1.7. 체험도구·장비 관리상태 및 위험요인이 있는 체험프로그램운영(물놀이 등)시 안전장비 구비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체험도구·장비 파손, 불결 여부 등 관리상태와 물놀이 등 안전장비가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장비 구비 여부 확인	
	2.1.8.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2.1.9. 비상약품 및 소화기 비치 여부(5점) - 모든 체험장 내 의약품과 소화기 비치(5점) - 일부 체험장 내 의약품과 소화기 비치(3점) - 미비치(0) ▶ 비상약품(내용물 상태 양호) 및 소화기(충전 및 유효기간 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가점>	○ 프로그램 상시성 여부(1점) - 있음(1점) : 언제든지 찾아가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 없음(0점)

<숙박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1.1.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1.1.1. 숙박 건물외관 청결 및 보존 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건물 외관 파손, 부식, 탈색 여부, 주위 쓰레기 방치 등 관리 상태를 육안 확인	
	1.1.2. 외관 및 주위환경이 농원특색 반영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건물외관(지붕, 벽면 등) 및 주변(울타리, 화단 등)이 지역 특화물(나무, 꽃, 농특부산물, 옹기, 황토, 신우대 등)로 조정되거나 꾸며져 지역특색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고 심사단 개인별 주관적으로 평가	
	1.1.3. 소음 및 악취 유무(3점) - 우수(3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숙박시설 외부 또는 주변에 소음유발 시설, 축산분뇨·퇴비장·양돈장·양계장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확인	
	1.1.4. 객실, 복도, 계단, 욕실 등의 소독 유무(3점) - 우수(3점) - 보통(1점) - 미흡(0점) ▶ 1~2개월 미만 마다 1회(우수), 2~6개월미만 1회(보통), 6월이상(미흡), 소독실시 자료 확인(관리일지 및 서명여부 확인)	
② 출입구 및 안전관리	2.1. 출입구 및 안전관리	
	2.1.1. 건물 출입구(출입문, 계단 포함)의 청결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출입구, 출입문 및 계단 주변 쓰레기, 빈병, 오물, 먼지 등 유무와 정리상태 확인	
	2.1.2.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표시 여부(3점) -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가 모두 있음(3점) - 일부 객실에만 있음(2점) - 소화기 관리가 부실하고 비상구 표시가 없음(0점) ▶ 각 층마다 또는 객실마다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표시 여부 확인 ▶ 단층건물은 출입구가 바로 실외로 연결되는 경우 비상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	
	2.1.3.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③ 객실 관리	3.1. 객실 관리	
	3.1.1. 객실 분위기 (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정갈하고 객실에 어울리는 벽지 또는 마감재, 적절한 조명상태 (객실, 복도, 계단), 커튼 등 사용 여부 확인	
	3.1.2. 객실 및 창문마다 잠금장치 설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객실마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육안 확인	
	3.1.3. 객실 내부(문, 바닥, 창문, 천장 등) 청결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객실 내부 얼룩, 오물, 먼지 유무 및 파손되거나 금간 부분 유무 등 관리상태 확인	
	3.1.4. 객실 내 악취 유무(2점) - 우수(2점) - 미흡(0점) ▶ 객실 내부 곰팡이나 기타 역한 냄새 유무 확인	
	3.1.5 방충시설 설치 여부(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객실 창문에 방충망 설치 및 상태 확인	
	3.1.6. 객실 냉·난방 조절 기능 유무(3점) - 있음 (3점) - 없음 (0점) ▶ 객실 냉난방시설 확인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조절기능 확인	
	3.1.7. 침구류 청결 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침구류 얼룩 및 머리카락 부착, 냄새 발생 유무 등 관리상태 확인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합숙자) 1인(1회)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시트같이 등)하고, 수시로 일광(건조)	
	3.1.8. 비품관리 상태(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비품(옷걸이, 거울 등 비치) 확인	
	3.1.9. 비상손전등 비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비상손전등 비치여부 확인	
3.1.10. 객실이용 약관 (안내문) 비치 및 고객불편 해소 안내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객실 이용 관련 약관(안내문)을 객실내부 또는 육안으로 식별이 쉬운 곳에 비치여부 확인 ▶ 비상시 고객 담당자 전화번호나 연락가능한 공공기관 전화번호, 비상대피도 등 객실 내에 제공하는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④ 화장실 및 욕실관리	4.1. 화장실 및 욕실 관리	
	4.1.1. 화장실 실내위치 여부(1점) - 있음(1점) - 없음(0점) ▶ 화장실샤워실 객실마다 위치 또는 건물 실내위치 여부 등 확인	
	4.1.2. 좌변기 및 샤워기 설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좌변기 및 샤워기 설치 여부 확인	
	4.1.3. 온수 제공 및 공급 수량(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화장실 및 샤워실 온수 제공 여부 및 수량 상태 확인	
	4.1.4. 환풍기 시설 및 작동 여부(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육안 확인	
	4.1.5. 화장실 청결 등 관리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화장실 냄새 및 오물 유무, 내부 시설 및 마감재 등 청결 상태 및 미끄럼방지 조치, 적절한 조명상태 확인, 휴지·비누 등 비품 비치	
<가점>	○ 숙박 전용 시설 여부(1점) - 전용(1점) - 비전용(0점) ▶ 숙박을 위한 단독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육안 또는 자료로 확인	
	○ 객실 종류의 다양성 및 명패 부착 여부(1점) - 우수(1점) - 미흡(0점) ▶ 객실크기가 다른 2종류 이상 객실 구비 및 객실별 명패 부착 여부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2점) - 준수(2점) - 미준수(0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 2014.3.21)을 채택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홈페이지 및 안내문 등에 게시)	
<감점>	○ 객실 내 화재예방 시설 미 설치 : (△3점) - 미설치(△3점) : 화재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등 미 설치 - 설치(0점) ▶ 육안 확인	

<음식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음식의 특색	1.1. 음식 특색	
	1.1.1.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음식 제공(10점) - 우수(10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지역 특색이 반영된 음식이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그 지역 농 특산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지 확인, 제공되는 음식의 사진자료 식단 등으로 확인	
	1.1.2. 음식의 원산지 표시 및 메뉴판 부착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제공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및 메뉴판 부착 여부 육안 확인	
② 식당 관리	2.1. 식당 청결상태	
	2.1.1. 식사장소 청결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식사장소 얼룩, 오물, 먼지 유무 및 전반적인 분위기 등 육안 확인	
	2.1.2. 실내 또는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시설 관리(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식사장소 인근에 화장실·세면장 유무 및 청결 등 관리상태 육안 확인	
	2.2. 주방 청결상태	
	2.2.1. 조리장소 청결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조리실 내부 집기와 환기구, 바닥 등 시설 관리상태 및 배수구 등 오물, 냄새 유무 확인	
	2.2.2.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2점) - 설치(2점) - 미설치(0점) ▶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가스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는 2점)	
	2.2.3. 식재료 및 양념 등 보관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냉동·냉장시설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유통 기간 준수여부 등 육안 확인	
	2.2.4. 조리실 종사자 및 식당 종사자 위생복장 착용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조리실 및 식당 종사자 위생복장 착용 여부 및 위생복 청결상태 등 육안 또는 관리상태(사진자료 또는 위생복 청결 등 관리상태로 확인)	
	2.2.5. 내부 정기적 소독 여부(2점) - 실시(2점) - 미실시(0점) ▶ 주기적 소독 실시 자료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식당 관리	2.3. 식기 위생관리	
	2.3.1. 식기 위생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 - 미흡(0점) ▶ 식기 종류 및 관리상태 육안 확인	
	2.3.2. 식사 부대 비품(칼, 행주, 컵 등) 등 관리 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식기소독기, 건조기 등 사용 여부 및 식기 및 비품 보관상태 육안 확인	
③ 식당 시설 관리	3.1. 건물 내·외관	
	3.1.1. 식당 외관 관리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외관 파손, 부식, 탈색 여부 및 주변 청결상태 육안 확인	
	3.1.2. 식음장소 청결 및 냅킨·물컵 비치 등 관리상태(5)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음식 제공장소에 파리 등의 위생해충이 없고, 식탁 및 의자, 바닥 등이 깨끗이 청소·정돈되고 있는지	
	3.1.3. 조명 상태(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취식 및 조리장소의 활동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정성평가)	
	3.1.4.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3.2. 비품관리 상태	
3.2.1. 냉난방시설 및 청결 등 관리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냉·난방시설 :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난로 등 ▶ 식사시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와 관리 및 작동상태 육안 확인		
<가점>	○ 친환경 농산물 사용·제공(2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림축산물 사용(주재료·원료) ※ 친환경인증 여부 등은 인증증명서 등 관련자료 확인	

3. 농촌민박 등급결정 평가표

구분		내 용(30개 항목 124점)
평 가 대 상		경관 및 서비스부문, 숙박부문
경관 및 서비스 부문	평가영역	2개 영역(경관, 고객응대 서비스)
	항목 수 및 배점	총 8개 항목, 41점 (가점 1개 항목 2점 제외)
		·경관 및 자원: 2개 항목(20점)
		·고객 서비스 : 6개 항목(21점)
		·가점 : 1개 항목(2점)
숙박부문	평가영역	4개 영역(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출입구 및 안전관리, 객실관리, 화장실 및 욕실관리)
	항목 수 및 배점	총 22개 항목, 83점 (가·감점 4개 항목 △1점 제외)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 4개 항목(18점)
		·출입구 및 안전관리 : 4개 항목(16점)
		·객실관리 : 8개 항목(32점)
		·화장실 및 욕실관리 : 6개 항목(17점)
		·가점 : 2개 항목(3점) ·감점 : 2개 항목(△4점)

<경관 및 서비스 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경관 및 자원	1.1 경관 및 주변환경	
	1.1.1 농촌민박 경관 및 주변환경 (10점) - 최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농촌민박 입지 및 주변 경관을 보고 심사단 개인별 5단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 점수를 부여할 때 고려한 사항을 2~3개 정도 간략히 기술 ○ ○	
	1.1.2. 농촌민박 내부 경관 (10점) - 최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농촌민박 마당, 휴게공간 조성, 간판 등 경관을 보고 심사단 개별 주관적으로 평가	
	【평가의견】 ○ ○ ※ 평가 전반에 대한 고려요소 ▶ 조화성 : 관광농원 내·외부 경관이 자연과 조화되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 청결성 : 쓰레기·방치 시설물 등이 없이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지 ▶ 쾌적성 : 소음·악취·혼잡함 없이 편안함,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지 ▶ 고유성 : 내·외부 환경 요소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지	
② 고객 서비스	2.1 고객 서비스	
	2.1.1. 주차 편리성(2점) - 우수(2점) - 미흡(0점) ▶ 주차에 지장이 없는지 주차공간 또는 여유공간 확인	
	2.1.2. 보험 가입 여부(3점) - 가입(3점) - 미가입(0점) ▶ 시설물 화재보험 등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로 확인	
	2.1.3. 농촌민박 운영인력의 방문객 응대와 불편사항 해결시스템(5점)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불량(0점) ▶ 방문객들을 반기고, 시골의 정을 느끼도록 대하는지 여부(사진, 기록물 등 확인)와 불편사항 발생시 연락처가 객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잘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단 개별 주관적인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고객 서비스	2.1.4. 홈페이지에서 숙박관련 정보 제공과 예약 및 환불 공시 여부(5점)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불량(0점) ▶ 홈페이지에 인근지역 및 숙박 관련 가격 정보, 객실안내 등 유용한 정보 제공 정도와 예약가능여부 및 방법 편리성 확인	
	2.1.5. 카드결제 가능 여부(3점) - 가능(3점) - 불가능(0점) ▶ 숙박 요금 카드 결제 가능 여부 확인	
	2.1.6. 민박 대표자의 위생·안전교육 이수 여부(3점) - 안전 및 위생교육 모두 이수 (3점) - 1가지 교육만 이수 (2점) - 미이수 (0점) ▶ 최근 1년 이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한 교육이수여부 확인	
<가 점>	○ 외래관광객 위한 외국어 표기 홍보·안내문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2점) - 홍보·안내문비치(1점), 홈페이지 구축(1점)	

<숙박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①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1.1.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	
	1.1.1. 숙박 건물외관 상태(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건물 외관 파손, 부식, 탈색 여부, 주위 쓰레기 방치 등 관리 상태를 육안 확인	
	1.1.2. 외관의 농촌다움 반영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건물외관의 건축양식, 조경 등이 농촌다움 및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고 심사단 개인별 주관적으로 평가	
	1.1.3. 소음 및 악취 유무(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숙박시설 외부 또는 주변에 소음유발 시설, 축산분뇨·퇴비장·양돈장·양계장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확인	
	1.1.4. 객실, 복도, 계단, 욕실 등의 소독 유무(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1~2개월 미만 마다 1회(우수), 2~6개월미만 1회(보통), 6월이상(미흡), 소독실시 자료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② 출입구 및 안전관리	2.1. 출입구 및 안전관리	
	2.1.1. 건물 출입구(출입문, 계단 포함)의 청결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출입구, 출입문 및 계단 주변 쓰레기, 빈병, 오물, 먼지 등 유무와 정리상태 확인	
	2.1.2. 출입구 및 공용공간 개별사용 여부(3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0점) ▶ 출입구가 주인집과 구분되는지, 거실(주방) 및 화장실(샤워실) 등 공용공간을 별개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 독립성 정도를 육안 확인	
	2.1.3.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표시 여부(3점) -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가 모두 있음(3점) - 일부 객실에만 있음(2점) - 소화기 관리가 부실하고 비상구 표시가 없음(0점) ▶ 각 층마다 또는 객실마다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표시 여부 확인 ▶ 단층건물은 출입구가 바로 실외로 연결되는 경우 비상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	
	2.1.4.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 ▶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주위 물기, 전선의 열화노화상태, 전선의 외관처리 상태 등을 육안 확인 ▶ 플러그에 적정수의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상태 확인	
③ 객실 관리	3.1. 객실 관리	
	3.1.1. 객실 분위기 (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정갈하고 객실에 어울리는 벽지 또는 마감재, 적절한 조명상태(객실, 복도, 계단), 커튼 등 사용 여부 확인	
	3.1.2. 객실·창문 잠금장치 및 방충시설 설치 여부(3점) - 우수(3점) - 보통(1) - 없음(0점) ▶ 객실마다 잠금장치 및 방충망설치 여부 육안 확인	
	3.1.3. 객실 내부(문, 바닥, 창문, 천장 등) 청결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객실 내부 악취, 얼룩, 오물, 먼지 유무 및 파손되거나 금간 부분 유무 등 관리상태 확인	
	3.1.4. 객실 냉·난방 조절 기능 유무(3점) - 있음 (3점) - 없음 (0점) ▶ 객실 냉난방시설 확인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조절기능 확인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③ 객실 관리	3.1.5. 침구류 청결 상태(7점) - 우수(7점) - 보통(5점) - 미흡(3점) - 불량(0점) ▶ 침구류 얼룩 및 머리카락 부착, 냄새 발생 유무 등 관리상태 확인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합숙자) 1인(1회)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시트같이 등)하고, 수시로 일광(건조)	
	3.1.6. 비품관리 상태(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비품(옷걸이, 거울 등 비치) 확인	
	3.1.7. 비상손전등 비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비상손전등 비치여부 확인	
	3.1.8. 객실이용 약관 (안내문) 비치 및 고객불편 해소 안내 여부(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객실 이용 관련 약관(안내문)을 객실내부 또는 욕안으로 식별이 쉬운 곳에 비치여부 확인 ▶ 비상시 마을 담당자 전화번호나 연락가능한 공공기관 전화번호, 비상대피도 등 객실 내에 제공하는지	
④ 화장실 및 욕실관리	4.1. 화장실 및 욕실 관리	
	4.1.1. 화장실 및 욕실 실내위치 여부(1점) - 있음(1점) - 없음(0점) ▶ 화장실·샤워실 객실마다 위치 또는 건물 실내위치 여부 등 확인	
	4.1.2. 좌변기 및 샤워기 설치 여부(2점) - 있음(2점) - 없음(0점) ▶ 좌변기 및 샤워기 설치 여부 확인	
	4.1.3. 온수 제공 및 공급 수량(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화장실 및 샤워실 온수 제공 여부 및 수량 상태 확인	
	4.1.4. 화장실 환풍기 시설 및 작동 여부(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욕안 확인	
	4.1.5. 조명 상태(2점) - 우수(2점) - 보통(1점) - 미흡(0점) ▶ 화장실 사용에 적절한 밝기인지 확인(정성평가)	
	4.1.6. 화장실 청결 상태(5점)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불량(0점) ▶ 화장실 냄새 및 오물 유무, 내부 시설 및 마감재 등 청결 상태 확인, 휴지·비누 등 비품 추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점수
<가점>	○ 객실 종류의 다양성 및 명패 부착 여부(1점) - 우수(1점) - 미흡(0점) ▶ 객실크기가 다른 2종류 이상 객실 구비 및 객실별 명패 부착 여부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2점) - 준수(2점) - 미준수(0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 2014.3.21)을 채택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홈페이지 및 안내문 등에 게시)	
<감점>	○ 객실 내 화재예방 시설 미 설치 : (△3점) - 미설치(△3점) : 화재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등 미 설치 - 설치(0점) ▶ 육안 확인	
	○ 최근 2년간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보험료 지불) 발생 : 건당 (△1점)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방법

□ 등급결정 부문

- 농촌관광사업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은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의 4개 부문, 농촌민박사업은 「경관 및 서비스」, 「숙박」의 2개 부문으로 하여 각 부문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체험」·「숙박」·「음식」의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포함된 시설이 없는 부문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다만, 시설 없이 농지, 운동장 등의 야외체험장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체험프로그램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체험」부문 등급부여
- 농촌관광사업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결정대상 시설 및 설비물(편의, 체험, 숙박, 음식)은 “마을공동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개인시설’이라 함)이 필요 시 공동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규약(정관), 사업계획서(운영 계획) 등에 규정되어 있고 마을협의회 대표와 개인시설 소유자가 마을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합의(계약서 등) 후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문별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등급결정 방법

-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이 별표1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된 득점율을 기준으로, 부문별 만점 기준 90%이상은 1등급, 90%미만 80%이상은 2등급, 80%미만 70%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가·감점 항목은 부문별 만점에 포함하지 않고, 산출된 득점에 해당 점수를 가감하여 득점율을 산정하며, 계산 시 정수 미만은 절사함(반올림 미적용)

□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 부문별 등급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이 부문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
 - 체험, 숙박, 음식 등 각 부문별 시설이 복수(숙박시설 중 단독건물에 복수의 객실 포함)인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개인시설(객실)이 5동(호) 이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5동(호)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 평가할 수 있음(추가선정기준은 당해 현장 심사단장이 선정)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1월 30일까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input type="checkbox"/> 관광농원사업 <input type="checkbox"/> 농촌민박사업				

신청인	사업자(대표자)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 주소와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재	

현황	상호 또는 명칭	영업신고일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현재등급 : 경관 등급, 체험 등급 숙박 등급, 음식 등급	현재등급결정일

신청 (변경) 사유	
------------------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결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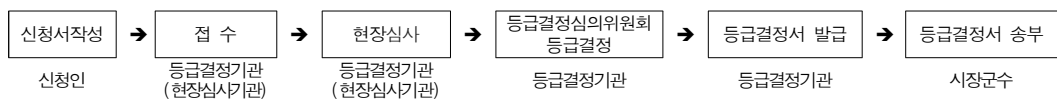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급결정기관명) 귀하

처리절차



첨부 서류	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한함 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 : 관광농원사업자에 한함 4.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 농촌민박사업자에 한함 5.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일 경우만 첨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업자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수	총 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부문		체험() / 숙박() / 음식()	
등급결정대상 신청 시설물	<input type="checkbox"/> 체험시설 개, <input type="checkbox"/> 음식시설 개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개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개	

체험 시설1	시설명	면적	이용현황	주소	소유자	건축연도	검용사용 여부 체크		
							체험	숙박	음식
체험 시설2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숙박 시설1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객실수	개			
	주소								
숙박 시설2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객실수	개			
	주소								
음식 시설1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편의 시설1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위 체험휴양마을의 지정부문 및 시설물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로 확인함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유의사항 : 1. 시장·군수는 등급결정 신청일 현재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부문과 시설물 운영여부 확인
 2. 한 건물 내 硯별로 전용과 겸용이 구분될 경우 각각 작성(별지사용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관광농원)

사 업 자 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수	총	개
등급결정대상 시설물	<input type="checkbox"/> 체험시설 개,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개	<input type="checkbox"/> 음식점시설 개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개	

체 험 시설1	시설명	소유자	검용사용 여부 체크		
	면적	건축연도	체험	숙박	음식
	이용현황				
	주소				
체 험 시설2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숙 박 시설1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객실수	개		
	주소				
숙 박 시설2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객실수	개		
	주소				
음 식 시설1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음 식 시설2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편 의 시설1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편 의 시설2	시설명	소유자			
	면적	건축연도			
	이용현황				
	주소				

위 시설물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에 따라 관광농원사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로 확인함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유의사항 : 1. 시장·군수는 등급결정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인지의 여부를 확인
2. 한 건물 내 室별로 전용과 겸용이 구분될 경우 각각 작성(별지사용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농촌민박사업)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주택연면적	m ²	전체방수 (면적)	개 (m ²)	객실수 (면적)	개 (m ²)	
건물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객실명	면적(m ²)	수용 인원	실내 화장실 (유무)	실내욕실 (유무)	출입구 구분 (유무)	
객실 1						
객실 2						
객실 3						
객실 4						
객실 5						
위 시설물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에 따라 농촌민박사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로 확인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left: 20px;"> 직인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시장·군수) </div>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실거주 여부, 주택종류, 시설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사업) 등급결정 증서

1. 사업자명(상호)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3. 소 재 지 :

4. 부문별 등급 및 로고

부문 (등급) 부문 (등급)

부문 (등급) 부문 (등급)

5. 유효기간 : ~ (년간)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부여 받았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등급결정기관)

직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1. 성 명 : (연락처)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참여분야 :

5. 위촉기간 : ~ (년간)

본인은 (등급결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등급결정기관명)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 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장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참여분야 :
5. 위촉기간 : ~ (년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에 따라 귀하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와 같이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등급결정기관명)

직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심의위원회 회의내용

1. 사업구분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3. 현장심사 점수

구 분	경관 및 서비스	체 험	숙 박	음 식
사업자명 1				
사업자명 2				
사업자명 3				
사업자명 4				

※ 부문별 점수는 현장심사위원의 평균점수 기재

4. 등급결정심의위원회 등급결정

구분	경관 및 서비스	체 험	숙 박	음 식
사업자명 1				
사업자명 2				
사업자명 3				
사업자명 4				

5. 회의참석자

분야	성 명	서 명	의 건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현장심사와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결정등급 차이 등 사유를 기재

첨부서류	회의록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8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구성순서	세 부 항 목
(1)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3)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4) 진행과정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 (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 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교육과목 및 시간	주요 교육내용	필수 교육시간
(1) 도농 교류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도농교류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알아야 할 관계법령으로 구성 	5시간 이상
(2) 마을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경영의 이해, 마을경영 자원의 유형별 관리, 마을경영사례, 마을지도자의 자질진단과 역할(리더십)실습, 소득분배, 마을주민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법인경영체 구성과 운영, 농특산물 가공업,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 조직운영 등으로 구성 	20시간 이상
(3) 지역 자원 발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자원의 의의 및 유형과 활용방안, 농어촌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방법, 자원활용 사례, 마을자원의 차별화 전략, 마을자원지도 만들기 등 지역자원 발굴·활용 등으로 구성 	20시간 이상
(4)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홍보 개념,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 마을홍보 및 마케팅 홍보자료 만들기, 마케팅 등으로 구성 	20시간 이상
(5)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내용 등으로 구성 	-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구성순서	세 부 항 목
(1)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3)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4) 진행과정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자료	○ 주요 소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 (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 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교육과목 및 시간	주요 교육내용	필 수 교육시간
(1)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공간구조의 특성 이해,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 선진국 농 어촌과의 비교,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구성	8시간 이상
(2)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 농어촌 지역개발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예산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3)농어촌지역자원 의 가치 창출	○ 농어촌 지역자원의 개념, 자원의 유형별 활용 방안, 경관의 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 으로 구성	8시간 이상
(4)농어촌지역 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수립 방법, 지역개발 계획 수립절차, 지역내 활동주체 조직화,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6시간 이상
(5)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구축, 갈등관리,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6)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 지역경영 전략, 지역의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7)혁신과 리더십	○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8시간 이상
(8)농어촌지역 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 현장견학 및 실습,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9)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 (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단계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 및 프로그램의 이해 ○ 체험프로그램의 주제별 분류 및 특성 ○ 주제별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이론 ○ 기획·운영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 ○ 사전·사후 평가 등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나) 농어촌 체험지도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지도의 필요성과 지도사의 역할 ○ 농어촌체험지도기법과 특징 ○ 체험프로그램 진행기법 및 실습 ○ 집단활동, 관계형성 훈련, 집단게임 ○ 진행리더십, 레크레이션 기법, 유머기법 등 기타 	
2단계	(다) 농어촌 체험교육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개발의 필요성 및 구성요소 ○ 교재(교구)개발의 절차 ○ 교재(교구)의 사례분석 및 만들기 ○ 교재(교구) 활용방안 등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라)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의 안전지도 ○ 농어촌체험시설에 대한 안전 기본지식 및 내용 등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방법 ○ 응급처치 이론과 실기 등 기타 	
3단계	(마)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농어촌 체험지도계획 및 실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지도 계획서 작성 ○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체험교재(교구) 만들기 및 지도 ○ 안전교육, 야외활동 지도 ○ 체험지도 결과 평가와 환류 등기타 	30시간 이상 (현장학습, 4일이상)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
 -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자격기준
(1)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1.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	2.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체험 관련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3. 레크리에이션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경력이 있는 자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4) 안전교육	1. 의사, 간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 대한적십자사, 119구조대 등 구호, 재난 안전관련 공공 기관 재직자 3.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1.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체험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레크리에이션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능력이 있는 자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직원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 (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단계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에 담긴 사상과 개념 ○ 농어촌마을의 형성 및 기능 ○ 농어촌마을과 생활 탐구 ○ 농어촌마을의 자원 및 특성 ○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나)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문화현상 ○ 농어촌지역의 전통문화 탐구 ○ 문화해설의 이해 ○ 농어업과 생활, 놀이, 축제 등을 활용한 마을해설 ○ 기타 	
2단계	(다) 마을해설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해설의 목적 및 해설가의 역할 ○ 마을해설의 체계와 다양한 기법 ○ 해설관련 자료수집 및 전략수립, 해설 자료 제작 등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 진행리더십, 유머기법 ○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라)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해설의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화 ○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 마을해설 프로그램개발 및 실습(도구 포함) ○ 결과 평가 등 ○ 기타 	
3단계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농어촌마을해설 계획 및 실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해설계획서 작성 ○ 마을해설의 진행 ○ 해설참여 고객의 평가 ○ 해설이 있는 마을 탐방 	30시간 이상 (현장학습, 4일이상)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어야 함
 -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과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기준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1.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농어촌 전통문화 해설	2.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농어촌 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마을해설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으로서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마을해설기법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06일까지로 한다.

농촌 융복합산업 관련 법령집

2017년 02월 일 인쇄

2017년 02월 일 발행

발행처_ **농림축산식품부**

주 소_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 화_ 044-201-1592

<http://www.mafra.go.kr>

인 쇄_ **고려문화**

전 화_ 044-868-5696

팩 스_ 044-868-4746

E-mail_ korea5676@hanmail.net